

# 11.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상인천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 (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학교 내 봉사는 생활안전부에서 기안하여 학교장의 결심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삭제)

### 제7조(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안전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전문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학년 선도 위원회 담당교사, 해당 담임교사, 기타위원 등)

####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삭제)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의 기타위원(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안전 관련 각계 전문가)을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제10조(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 제11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삭제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학생의 선도

### 제14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은 제외)’ (삭제)**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5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5일~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공공기관, 지역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이수자의 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청에서 안내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마.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바.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3. 특별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제16조(선도 관련 기타사항)** 학생 선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①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선도처분을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②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제공)
- ③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는 직접적인 체벌방법은 피하며 체력단련과 정신교육을 행하는 등의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17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표와 같다.<표1 참조>**

**제1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재심 거부 시 사유 반드시 기재)

**제19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표1>

구분	항	생활규정	징 계			
			학교내 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인권	1	학교구성원(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한 학생	○	○	○	○
	2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3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준법	4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5	경찰에 연행, 또는 구속된 후 훈방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8	공문서(성적표,진단서,체험학습,봉사활동 서류 등)를 위조한 학생	○	○	○	○
	9	금품 절도하거나 동조한 학생	○	○	○	
	10	금품을 빌린 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절취, 강탈한 학생	○	○	○	
	11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이동수단,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전동킥 보드를 이용한 학생	○	○	○	
	12	학교의 공공기물이나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13	일몰 후 학교에 미인정으로 들어오거나 학교안전에 위협적인 행위를 한 학생	○	○	○	
	14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1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참여한 학생	○	○	○	○
	1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동조한 학생	○	○	○	○
근태	17	정당한 사유없이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를 월 10회 이상인 학생	○	○		
	18	정당한 사유없이 미인정 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인터넷 퇴폐 행위	19	'청소년유해약물'(음주·전자)담배·가스·본드·향정신성의약품등)을 소지 또는 복용·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학생	○	○	○	○
	20	흥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21	도박(인터넷도박 포함), 인터넷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하거나 권유한 학생	○	○	○	
	22	학교 및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 게시한 학생	○	○	○	
	2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24	청소년 유해업소,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5회 이상 출입한 학생	○	○	○	
기타	25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	○	○
	26	선도, 징계 처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9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	○	○
	30	교원의 학생생활제규정에 의한 교육과 징계교육에 불응한 학생	○	○	○	○
	31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	○	○	○	○

## 제4장 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 제20조(사안설명)

- 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안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1조(심의절차)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설명
4.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의 사안 설명 및 질의·응답
5.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6.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7.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8.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9.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제22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 제23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24조 (선도처분 경감) 학교장은 선도처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인성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5조 (선도처분 해제) 선도처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선도처분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